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926호)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7. 4
나. 회부일자 : 2005. 7. 5
다. 상정·의결일자 : 2005. 7. 14

고성군수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중 중앙재해대책본부·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방재계획·응급대책등을 흡수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03.11법률 제7188호)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 나.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함 (안제4조)
- 다. 재난대비체계 단계를 구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함 (안 제7조)
- 라. 재난유형에 따른 실무반 편성·운영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 마.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 구축하도록 함 (안 제18조)
- 바. 재난상황을 보고(통보)시기별 보고(통보)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정함 (안 제25조)
- 사. 국가기반체계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정함 (안 제24조 내지 제3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3.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고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법 제16조에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목적으로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각종 재난대책 기간에 따른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과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장의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장의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2조에서 제23조까지 현장 집행관리, 현장 상황지원관의 운영 지원요청, 지원팀 운영, 책임기관과 단체의 협조 체제, 합동훈련, 인력·장비의 동원체제,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상황 단계별 편람 작성, 현장모니터 위원 위촉, 각종 재난상황보고 요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과 체계 구축을 위해 제24조에서 제30조까지 각종 재난의 상황전파, 임무지정, 상황관리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장 보칙의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 포상, 민간전문가 위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으며,

-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과 종전 조례의 폐지 규정, 종전의 고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정에 의한 처분과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고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의한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론 : 없음

7. 심사결과

-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